

# Tax News Flash

## - Transfer Pricing & Customs

September 23, 2024

삼성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1 이전가격

독일: 투자 세제 혜택, 필라2 관련 변경사항, 그룹 내 자금 조달 이전가격지침, MLI(Multilateral Instrument)법 제정

독일 연방 재무부(BMF)는 세법의 추가 개정 및 소득세율 조정을 위한 법안 초안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 인센티브 제안: 집합상각 및 정률 감가상각(collective and declining balance depreciation), 연구 보조금 확대
- 국내 세무 거래 보고 의무 도입

부처 초안 법안의 발표 이후, 첫 번째 단계로 상원(Bundesrat)의 정부 초안에 대한 검토가

---

이루어지며,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독일의 세금 관련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11월 24일 다자간 협약 적용 및 기타 추가 조치에 관한 법률"이 2024년 6월 21일 발표되었습니다.
- BMF는 2023년 12월 OECD 행정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법(Minimum Tax Act) 개정 법률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초안에서는 국가별 (CbC) 보고서 세이프하버 규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2024년 8월 14일 BMF는 그룹 내 자금 조달과 관련된 새로운 이전가격 규정에 대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체코: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top-up tax)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한 EU 지침 이행**

체코 재무부는 2023년 12월 31일에 발효된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한 EU 지침(EU Directive)을 이행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top-up tax) 도입을 위한 개정 초안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세액배분액 및 추가세액(Czech top-up tax)에 대한 신고 기한은 22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과세 기간의 경우 2026년 10월 31일이 신고기한이 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제출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2024년 첫 번째 기간에 대한 정보신고서 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 추가세액(Czech top-up tax) 정보 의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옵션이 도입됩니다. 이 의무는 납세자가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으며, 이 신고서가 추가세액(Czech top-up tax)에 대한 정보 신고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포함하고, 납세자가 이를 과세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 추가세액(Czech top-up tax) 납세자가 세이프하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구성기업의 범위를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 자회사, 체코 공화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무국적기업 (수행하는 활동이 조세조약에 따라 체코에서 과세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세금공제 및 통화 환산 기준에 대한 정의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개정안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2023서9625 (2024.06.05)

제목: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개발하여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하여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바, 특수관계 있는 국내외 계열회사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면서도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는 것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움 (기각)

###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청구법인 주-AAA")은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이하 "청구법인 주-BBB")의 완전자회사로 법인세법 제76조의 8 제1항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받아 2018~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 조사청은 청구법인 주-AA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주-AAA이 독점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주-AAA ○○○상표(이하 "쟁점상표권")를 2018~2021 사업연도 동안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 주-BBB 등 국내·외 28개 계열회사들에게 영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액 ○○○원(이하 "쟁점상표사용료") 익금산입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
-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주-AAA에게 2018~2020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원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청구법인 주-BBB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였고,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원(환급가산금 포함)을 연결모회사인 청구법인 주-BBB에게 환급함
- 청구법인 주-BBB는 쟁점상표사용료 중 2021 사업연도분에 대한 ○○○원은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쟁점

청구법인 주 AAA가 국내외 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 주장	처분청 의견
<p>국내 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룹 브랜드 가치는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으로서 쟁점상표권 역시 그룹 계열사들의 공동자산으로서의 경제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본건 계열회사들이 그룹 공통 광고비용을 안분하여 부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 주-AAA이 국내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li> <li>-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상표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에서 정의하는 시가 산정방법에 따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국내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함</li> </ul>	<p>청구법인 주-AAA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쟁점상표권을 국내 계열사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법인 주-AAA은 000의 주력 계열사이고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쟁점상표권 가치를 증가시킨 주 기여자로 쟁점상표권을 개발하여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하여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바,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배제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li> <li>- 상표권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함. 상표권은 국내에서 상표권은 하나의 독립된 재산으로 인식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들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당초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도 유상의 사용계약으로 전환하고 있음</li> <li>- 추가적으로 청구법인 주-AAA과 같이 상표권을 소유한 국내의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상표권의 사용대가를 적법하게 수취하고 있는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 주-AAA이 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함</li> </ul>
<p>국외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분청이 국조법 제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 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li> </ul>	<p>청구법인 주-AAA이 쟁점상표권을 국외 계열사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국조법 제4조에서 규정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법인 주-AAA은 쟁점상표권에 대한 법적 소유권자로서 국내·외에서 포괄적인 광고선전 활동, 상표권 유지·관리 등을 하고 있고, 국외에서 상표권이 가치 및 이익 창출 등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상표권에 대하여 어떠한 계약이나 합리적 근거 없이 국외 계열법인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li> </ul>

<p>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음</p> <p>- 처분청은 과세의 편의상 국외 계열회사들에게도 단순히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0.2%를 곱하여 산정하였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주-AAA은 해당 금액이 국조법상 합리적으로 산출한 정상가격이라고 볼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주-AAA이 국외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고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함</p>	<p>하고 있는바, 국내 계열법인과 동일하게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합리적임</p> <p>- 국내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산정현황에 따라, 국내 주요 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 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있으며, 상표권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정 수수료율 0.2%는 최소한도의 수수료율이고, 매출액은 영업수익에서 내부거래수익과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순매출액으로 하였으며, 계열사들이 부담한 그룹공동광고비는 쟁점상표권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보아 차감하여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계산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계열회사들이 쟁점상표권의 가치 증대에 기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므로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한 이 건 처분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임</p>
---	---

#### 4) 판단

청구법인 주-AAA은 쟁점상표권을 개발하여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하여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바,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외 계열회사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면서도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 주-AAA이 쟁점상표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있어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상표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국내 주요기업 및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주-AAA이 국내·외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또는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쟁점상표사용료를 익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03 관세

### 통상 관세 동향 Global Issue & Trend

美, 중국산 자재 사용한 AWC 예비판정 발표

## 1. 개요

2023년 10월 19일, 미국 상무부는 캄보디아, 한국,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하여 완성된 AWC(Aluminum Wire and Cable) 수입품이 명령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범위 조사를 시작함. 조사 결과, 2024년 8월 7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AWC 자재를 사용하여 한국 또는 베트남에서 제조 및 미국으로 수출한 AWC 완제품에 대해 긍정(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 예비 판정을 함.

## 2. 조사 대상 범위

이번 조사는 중국산 AWC 자재(예: 연선 및 케이블 또는 미완성 AWC 등)를 사용하여 캄보디아, 한국 또는 베트남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AWC(조사 대상 상품)를 범위로 함.

## 3. 예비판정 결과

미국 상무부는 캄보디아 조사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중국산 AWC 자재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한국 및 베트남 조사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중국산 AWC 자재가 사용되었다고 예비 판정하며, 아래와 같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함.

구분	부과율(%)
반덤핑관세	52.79%
상계관세	33.44%

다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AWC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생산자 및 수입자가 해당 AWC에 중국산 자재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경우, 예비판정 적용이 면제됨.

## 4. 시사점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AWC의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번 조사 및 예비판정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조사 대상 제3국에 대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최신 판례 소개: HS Code 변경 사례 (조심 2023관0143, 2024-07-02 결정)

####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2018.4.10.부터 2023.4.9.까지 독일의 A 등으로부터 유리 및 플라스틱 실험용 주사기(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각각의 HS Code를 신고하고 한-EU FTA에 따른 0%

---

관세율을 적용받아 통관함.

처분청은 2023.4.13.부터 2023.8.23.까지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HS Code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HS Code를 변경한 후, 기본관세율 및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추가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1. 심판청구를 제기함.

품명	기존		변경 후	
	HS Code	기본세율(협정세율)	HS Code	기본세율(협정세율)
유리 실험용 주사기	8413.91-9000	8% (0%)	7017.90-0000	8% (0%)
플라스틱 실험용 주사기	9031.90-9000	8% (0%)	3926.90-9000	6.5% (0%)

## 2. 처분 내용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HS Code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 및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3. 처분 근거

처분청이 변경한 HS Code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명백한 근거가 부족함.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조사가 불가능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원산지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등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불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 4. 시사점

본 판례를 통해 수입 이후 HS Code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HS code를 기반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FTA 원산지 특혜 세율 적용을 유지할 수 있음이 확인됨. 따라서 수입 이후 HS Code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신속히 파악하고 해당 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Key Contacts

## 삼성KPMG TAX6 본부



강길원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https://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https://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